**우송, 예리 태양광 발전사업**

**관리운영위수탁 계약서**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 위탁자 -**

**한화에너지 주식회사**

**- 수탁자 –**

**주식회사 센트럴이엔지**

**- 재수탁자 –**

**2021년 9월 28일**

목 차

[**제 1 조** **(정 의)** 2](#_Toc82265976)

[**제 2 조** **(업무의 위탁)** 8](#_Toc82265977)

[**제 3 조** **(수탁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11](#_Toc82265978)

[**제 4 조** **(수탁자의 관리운영 관련 준수사항)** 19](#_Toc82265979)

[**제 5 조** **(추가 계약의 체결 및 문서의 보관)** 32](#_Toc82265980)

[**제 6 조** **(위탁자의 업무협조 및 자문기관의 선임)** 32](#_Toc82265981)

[**제 7 조** **(관리운영수수료 등)** 32](#_Toc82265982)

[**제 8 조** **(진술 및 보장)** 36](#_Toc82265983)

[**제 9 조** **(연체이자)** 41](#_Toc82265984)

[**제 10 조** **(민원)** 41](#_Toc82265985)

[**제 11 조** **(손해배상)** 41](#_Toc82265986)

[**제 12 조** **(불가항력사유 발생시의 처리)** 43](#_Toc82265987)

[**제 13 조** **(계약의 해지 및 종료)** 45](#_Toc82265988)

[**제 14 조** **(기타)** 51](#_Toc82265989)

부록

부록 I 이건사업부지 및 이건사업시설 내역

부록 II 기간별 기준매출액

부록 III 운영지침서

부록 Ⅳ 대수선 기준

부록 V (발전소별) 경사면계수 및 대수선비적립금 등 내역

**관리운영위수탁계약서**

이 관리운영위수탁계약(서)(이하 “이계약(서)”)은 2021년 9월 28일 아래 당사자들간에 체결되었다.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이하 “위탁자”)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케이티앤지 세종타워 4층)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한화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수탁자”)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2, 10층(대치동, 홍우빌딩)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센트럴이엔지(이하 “재수탁자”)

(이하 위탁자 및 수탁자를 개별적으로 “당사자”, 총칭하여 “당사자들”)

**전 문**

A. 위탁자는 부록 I에 기재된 사업부지 일원(“이건사업부지”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부록 I에 기재된 바와 같음)에 건설된(되는) 신재생에너지법(아래에 정의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 태양광발전소 및 그 부속시설(“이건사업시설”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부록 I에 기재된 바와 같음)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고 공급인증서(아래에 정의됨)를 판매하는 등의 사업(“이건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B.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계약기간(제1조에 정의됨) 중 이건사업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업무를 이계약의 제조건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고, 이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이건사업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C. 재수탁자는 이계약서 체결일과 동시에 수탁자와 체결하는 관리운영재위수탁계약서(제1조에 정의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이건사업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재위탁받아 해당 재위탁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 **제 1 조 (정 의)**

제1항 정의

위에서 정의된 용어 외에 이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문맥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용어는 단수 및 복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계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대출약정서(아래 정의됨)에서 정의된 용어들은 이계약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거래서류”는 금융관련서류 및 사업관련서류를 말한다.

“계약기간”은 운영개시일(단, 대출약정서상 최초인출일 이전에 이건사업시설의 운영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최초인출일)로부터 기산하여 대출약정서상 대출원리금(연체이자 포함)이 전액 상환되는 날 또는 이십(20)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은 당사자들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단위운영기간”은 대출약정서상 최초인출일로부터 삼(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공급인증서”는 위탁자가 이건사업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급받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말한다.

“공급인증서매매계약(서)”은 위탁자가 공급인증서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체결한(하는) 제반 매매계약을 말한다.

“공급인증서판매수입”은 위탁자가 공급인증서를 판매하여 수취한 수입을 말하며, 문맥에 따라 “공급인증서매매대금”이라고도 한다.

“공사도급계약”은 이건사업시설의 건설 및 준공 등을 위하여 위탁자가 도급인으로서 체결한(하는) 공사도급계약을 말하며, 그 수정, 변경 또는 추가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관리운영계획”은 어느 사업연도에 대하여, 수탁자가 이계약에 따라 위탁자에 제출하는 이건사업시설에 관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을 말하고, 동 관리운영계획에는 대상 사업연도의 예상 발전량(월별), 안전점검 일정, 예상 발전효율(Performance Ratio)(월별), 유지보수(대수선 포함)계획, 이건사업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방침, 거래서류상 위탁자가 대상 사업연도에 작성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기타 이건사업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리운영재위수탁계약”은 수탁자가 이건사업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업무를 재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이계약 체결일과 동시에 수탁자와 재수탁자 사이에 체결된(되는) 관리운영재위수탁계약을 말한다.

“금융관련서류”는 대출약정서에 정의된 금융관련서류를 말한다.

“대리금융기관”은 대출약정서상 대리금융기관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를 말하며,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

“대주”는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주를 말하며,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

“대출약정서”는 위탁자가 이건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탁자를 차주로 하여 대주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이하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체결한 2021년 9월 28일자 금 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 자금재조달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를 말한다.

“대출약정서의기간”은 대출약정서 제15조 제1항에 정의된 대출약정서의 기간을 말한다.

“보험계약(들)”은 위탁자가 대출약정서와 관련하여 이건사업시설 또는 이건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가입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가입하도록 하는 보증 또는 보험계약(들)을 말한다.

“분기”는 어느 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기간을 말한다.

“불가항력사유”는 이계약의 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이계약의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로 인하여 이계약상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전국적 또는 사회산업 전반의 파업
2. 전력산업의 연대 파업
3. 전쟁, 폭동, 테러, 사변 또는 내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4. 지진, 홍수, 폭설, 해일, 화산폭발, 산사태, 비행기 충돌, 태풍, 낙뢰, 화재(수탁사의 귀책사유 이외) 등으로 인한 재해와 천재지변
5.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제3자 혹은 외부요인으로 인한 화재
6. 이건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 변경이나 경제환경 및 이건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금융관련서류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의 이건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발생

“사업관련서류”는 대출약정서에 정의된 사업관련서류를 말한다.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위 기간 중에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청산 완료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수탁자의 수익분”은 위탁자가 이계약 제7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할 관리운영수수료에서 “재수탁자의 수익분”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수수료의 일십오퍼센트(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법”은 대한민국 법률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을 말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연도”는 월력(calendar) 상의 어느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영업일”은 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개점하여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부 은행 또는 어느 은행의 일부 점포가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운영개시일”은 이건사업시설의 용도에 따라 생산된 전력이 전력시장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배전계통에 공급이 개시됨으로써 이건사업시설 전부의 상업운전이 개시된 날을 말한다.

“위탁자부담비용”이라 함은 이건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1. 위탁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한 보험료
2. 이건사업시설에 대한 대수선비(부록 Ⅳ 대수선 기준에 따름)
3. 이건사업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ㆍ고지되는 공공요금(전기, 용수, 유류, 가스, 통신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4. 위탁자를 납세ㆍ납부의무자로 하여 부과ㆍ고지되는 일체의 세금ㆍ공과금
5. 위탁자의 인건비(전기안전관리자 및 보조원의 급여, 인력 관련 보험, 연금 관련 비용 포함)
6. 일사량계 설치비용(일사량계 설치는 위탁자의 비용으로 단위운영기간 내 완료하도록 한다) 및 모니터링 시스템 업데이트 또는 수선비용
7. 각종 수수료(회계감사 수수료 및 REC 발급 거래 수수료,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안전검사 수수료)
8. 기타 이계약에서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정한 사항(위탁자 명의로 부과된 벌금 및 과태료 등)

“일반사무위탁계약(서)”은 위탁자의 일반사무를 일반사무수탁자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일반사무수탁자가 체결한(하는)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을 말한다.

“일반사무수탁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86, 6층 641호(쌍림동, 쌍림빌딩)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이씨인브파트너스 또는 그 승계인을 말한다.

“일반사무업무”는 일반사무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일반사무수탁자에게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전력판매수입”은 위탁자가 이건사업시설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여 수취한 수입을 말한다.

“정부”는 대한민국정부를 말하며, 이건사업에 대한 주무관청과 관계당국 및 정부조직법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재수탁자의 수익분”은 위탁자가 이계약 제7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할 관리운영수수료에서 “수탁자의 수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세공과금”은 정부에 의하여 부과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국세, 지방세, 과징금, 수입세, 관세, 공제, 부담 및 원천징수 등 일체의 재정적 성격의 부과금을 말한다(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최소유지적립금”은 위탁자가 대출약정에 따라 최초인출일에 대수선비적립계좌에 예치, 적립하는 부록V 기재의 대수선비적립금 중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수수료 지급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금원으로서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한 이건사업시설에 대한 대수선을 위한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수선비적립계좌에 적립 및 유지되어야 할 최소한의 대수선비적립금액을 말하고, 이건사업시설에 대한 최소유지적립금은 부록V 기재와 같다.

제2항 해석

문맥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계약의 해석은 아래의 원칙에 따른다.

1. “개월(들)”이라 함은 어느 역월에서 개시하여 해당 역월 중 기간이 개시된 날에 숫자상으로 상응하는 날에 종료하는 기간을 말하며, 위 기간이 역월의 최종일에 개시된 경우 또는 해당 역월에 상응하는 날이 없는 경우 위 기간은 해당역월의 최종일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2. 이계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회계용어는 이약정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에서 인정되는 일반회계원칙에 따른다.

## **제 2 조 (업무의 위탁)**

제1항 위탁자는 계약기간 동안,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1. 위탁자가 거래서류에 따라 가지는 권리나 권한의 대행
2. 위탁자가 거래서류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의무의 대행
3. 위탁자의 금융관련서류에 따른 담보설정 의무의 대행
4. 계약기간 중 이건사업시설의 관리∙운영, 검사 및 유지보수
5. 이건사업시설의 운영관리{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관리운영, 안전관리, 모듈ㆍ인버터 등의 제조사에 대한 보증이행청구 및 제조사에 의한 보증이행조치, 유지보수, 하자보수(공사도급계약에 의한 하자보수보증 대상인 하자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대수선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위탁자가 거래서류에 따라 이건사업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모든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
6. 이건사업시설 및 시스템 효율 등에 대한 검사의 수행
7. 이건사업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시설물(모듈각도와 동일한 일사량계, 발전시간 문자서비스를 포함한 모니터링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8. 위탁자가 이건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할 각종 업무 대행
9. 위탁자의 이건사업부지 유지보수 업무 대행. (다만,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건사업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10. 위탁자를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금의 청구 협조 업무(재산종합보험, 기업휴지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1. 위탁자가 공급인증서매매계약상 구매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
12. 설비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일(1)개월 이내에 공급인증서 매매에 대한 전력거래소 신고 및 협조 업무 대행
13. 위탁자가 해산하는 경우 위탁자의 청산인이 잔여재산의 분배를 포함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에 대한 협조
14. 기타 이건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업무 및 위에서 열거한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제2항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위탁자가 달리 명시적으로 위탁하지 않는 한, 이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일반사무위탁계약에 일반사무위탁자의 업무로 정한 사항
2. 관련 법령, 거래서류, 정관 기타 위탁자의 내부 규정상 위탁자가 제3자에게 업무의 대행을 위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3. 업무의 성질상 위탁자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고 직접 행하여야 하는 사항
4. 위탁자가 달리 명시적으로 위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위탁을 철회하는 사항

제3항 수탁자는 재수탁자 주식회사 센트럴이엔지에게 이계약에 따른 위탁업무의 일부를 재위탁(이하 본 호에 따른 업무 재위탁을 위하여 수탁자와 재수탁자는 관리운영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하기로 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 재위탁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수탁자는 재수탁자로 하여금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사용하여 관리운영재위수탁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수탁자는 본 조 제3항에 따른 관리운영재위수탁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이계약상 자신의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관리운영재위수탁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위탁자와 재수탁자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형성되지 아니하며 재수탁자는 이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계약상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지 아니한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재수탁자가 관리운영재위수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를 위하여 재위탁업무를 수행한 행위나 그 결과는 이계약상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한 행위나 그 결과로 간주하며, 이에 수탁자는 재수탁자의 위 행위나 그 결과에 대하여 이계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제5항 이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재수탁자가 이계약 및 이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정한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한 수탁자 및 재수탁자에게 이건사업시설에 대하여 이계약의 이행을 위한 제한 없는 접근권 및 사용권을 부여한다.

제6항 이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독립된 계약자로서 이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이계약에서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이계약에 따른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탁자의 대리인 또는 피고용자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와 신탁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다.

## **제 3 조 (수탁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제1항 수탁자는 계약기간 동안 제7조에 따른 확정 관리운영수수료로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관리운영수수료는 위탁자의 귀책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변경되지 않는다.

제2항 수탁자는 이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항 수탁자는 이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사용매뉴얼, 거래서류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항 노무 및 임원

1. 인력의 확보

수탁자는 이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숙련되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하면, 수탁자는 이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십(10)영업일 이내에 이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전담할 인력 및 기타 위탁자가 이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위탁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1. 교육 및 훈련

수탁자는 이계약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원들을 모집, 채용 및 훈련하고, 지속적인 연수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그 세부사항과 일정은 연간사업계획에 명시한다. 또한, 수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 항 (사)호의 위탁자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 연수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고용관계

수탁자는 이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위탁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고용한 모든 직원은 수탁자 소속의 직원(하도급계약상 수탁자의 책임 부분 포함)임을 확인하며 그들의 근무시간, 보수, 근무환경, 복지, 기타 고용 및 사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수탁자가 책임진다. 수탁자는 노사문제에 관하여 위탁자를 구속하거나 달리 의무를 부담시키게 될 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을 인정하고 합의한다.

1. 세금과 인건비

수탁자는 위탁업무 이행을 담당하는 수탁자 임직원의 고용에 관련된 모든 소득, 급여, 퇴직금, 실업 혜택과 기타 다른 모든 세금이나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계약을 제외한 거래서류상 달리 명시하거나 관련 법령상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위하여 고용하는 모든 직원은 수탁자 소속의 직원으로 하며, 위탁자는 동 직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급여, 퇴직금 및 실업혜택 포함)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면책

수탁자는 수탁자 소속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가 이건사업을 위하여 채용/사용/위탁한 인력의 작위 또는 부작위(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함)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 또는 손실(위 인력의 행위로 인하여 위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탁자에게 배상/보상하기로 한다. 또한 전단의 규정을 해함이 없이,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의무위반, 불이행, 과실 또는 계약위반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문제된 사안에 관한 수탁자의 지시, 절차, 가이드라인 또는 업무매뉴얼에 따라 행동한 위탁자 소속 임∙직원(본 항 (사)호의 임∙직원 포함), 수탁자 소속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가 이건사업을 위하여 채용/사용/위탁한 인력의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는 수탁자의 행위로 본다.

1. 업무감독

수탁자는 근로자들이 담당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업무를 감독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탁자가 근로자들이 그들의 담당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보조원

위탁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이건사업시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이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여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보조원으로 선임하고, 수탁자는 위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보조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항 수탁자는 관리운영 등 이계약상 수탁자의 업무에 속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관련 법령이나 거래서류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탁자는 이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 또는 수탁자의 지위 이외의 지위에 기하여 이건사업에 대한 위탁자의 권리, 권한, 지위 또는 이익에 반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항 보험의 가입 및 유지 등

(가) 보험의 가입

위탁자는 계약기간 동안 법령에 따라 위탁자가 대출약정서상 대주 또는 대리기관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요구되는 보험에 가입하고 수탁자는 이에 협조한다.

수탁자는 계약기간 동안 법령에 따라 수탁자에게 가입될 것이 요구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금의 청구

계약기간 중 수탁자는 본 항 (가)호에 따라 가입한 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보험계약상 최대한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험금 청구, 이를 위한 입증행위 등 제반조치에 대하여 협조한다.

제7항 이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당사자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또는 위탁자를 대리/대행하여 이건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항 수탁자는 이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위탁자로 하여금 위탁자가 당사자인 거래서류를 위반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항 파손행위

수탁자는 이건사업부지 및 이건사업시설에 대한 파손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건사업부지 및 이건사업시설에 대한 파손행위가 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및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는 이건사업시설의 파손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0항 안전

수탁자는 관리운영업무가 법령, 행정적 요구사항, 거래서류를 구성하거나 그에 따라 작성된 문서 등에 따라 안전한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수탁자는 관리운영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항 조세, 공공요금 등

위탁자는 이건사업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 및 관리운영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조세 기타 제세공과금, 벌금, 과태료, 공공요금(전기, 용수, 유류, 가스, 통신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이하 동일함) 등 위탁자부담비용을 자신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건사업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 및 관리운영업무와 관련하여 수탁자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모든 조세 기타 제세공과금, 벌금, 과태료, 공공요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2항 환경 및 폐기물 관리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 이건사업시설에서 발생하거나 이건사업과 관련하여 이건사업부지에서 발견된 모든 폐기물(위험물 포함)의 매립, 현장외 이송이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전의 원인 사실에 기인하여 발생하거나 발견된 폐기물(이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에 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항 위탁자의 보수 및 교체 권한

(가)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 이건사업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의무(하자보수 및 대수선 포함)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공사가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시공사로 하여금 동 하자를 즉시 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전단의 규정을 해함이 없이, 위탁자는 이건사업시설을 구성하는 물건 또는 이건사업시설의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탁자가 시공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하자보수청구권 기타 해당 하자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위탁자의 시공사에 대한 권리(이하 “하자보수청구권등”)를 수탁자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위 하자보수청구권등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수탁자가 본 항에 따라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탁자는 동 초과금액을 시공사로부터 수령하는 즉시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수탁자가 위 (가)에 따른 의무를 위탁자가 합리적으로 만족할 수준으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수행한 보수, 교체 업무를 수탁자의 비용으로 시정할 것을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다) 수탁자가 위 (나)의 통지를 수령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해당 보수, 교체 업무의 성격 및 긴급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소요가 예상되는 기간을 협의하여 정하고 수탁자는 위 협의된 기한 내에 수탁자의 비용으로 해당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만일 위 협의된 기한 내에 수탁자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탁자가 협의 후 즉시 위 시정조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직접 시정 및 교체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본 항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이를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제14항 기술실사 등

(가) 위탁자 및 대출약정서상 대주는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예측했던 발전시간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위탁자의 비용으로 이건사업 및 이건사업시설에 대한 기술 및 토목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수탁자의 이계약상 의무 불이행(어떠한 사유로든 보장발전시간이 달성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함)이 있고, 위탁자가 기술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기술실사를 수행할 것을 수탁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나) 수탁자는 위 (가)에 의한 기술실사 결과의 보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의 귀책사유라고 객관적 및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 지체없이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보정, 보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본 조항에 따른 의무를 위탁자가 합리적으로 만족할 수준으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직접 보정, 보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본 조항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위탁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즉시 이를 전액(단, 위탁자가 보정, 보완조치를 취한 날이 속한 분기에 대한 관리운영수수료를 한도로 함) 지급하여야 한다.

제15항 자금의 수령

수탁자는 이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계산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전을 위탁자가 지정하는 위탁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받아야 한다. 거래관행상 불가피 하거나 입금자의 착오로 인하여 수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이체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 금원이 입금되는 즉시 위탁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제16항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과의 관계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의 취소, 해지, 무효 등으로 인하여 일반사무수탁자가 일반사무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일반사무수탁자가 일반사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수탁자는 별도 서면 합의 없이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상 일반사무수탁자의 지위를 자동 승계하여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일반사무업무를 수행한다. 위 승계의 효력은 위탁자 또는 대리금융기관이 그 사실을 재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 발생하며, 재수탁자는 위 승계의 효력 발생 전에 일반사무수탁자가 부담한 채무나 책임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 4 조 (수탁자의 관리운영 관련 준수사항)**

수탁자는 계약기간 동안 이건사업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이행할 의무(이하 “관리운영의무”)를 부담한다. 관리운영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발전시간 보장

(가) 발전시간 보장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운영개시일(단, 대출약정서상 최초인출일 이전에 이건사업시설의 운영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최초인출일)로부터 삼(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이하 “최저발전시간보장기간”) 이건사업시설에 대하여 일평균 실제발전시간이 삼점오영(3.50)시간{단, 운영개시일(단, 최저발전시간보장기간의 기산일이 최초인출일인 경우에는 최초인출일을 말함)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0.5%의 감소율 적용}(이하 “일평균 보장발전시간”)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을 보장(이하 “발전시간보장”)한다. 수탁자가 발전시간을 보장한다고 함은, 이건사업시설에 대한 연도별 일평균 실제발전시간이 일평균 보장발전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연도별 실제발전량(이하 “연도별 실제발전량”)이 연도별 보장발전량(상세 내역은 부록II 기재와 같고, 이하 “연도별 보장발전량”)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계약상 연도별 실제발전량 및 연도별 보장발전량의 계산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연도별 실제발전량(kWh) = 이건사업시설의 발전설비용량(kW)

× 연간 총 실제발전시간(h)

연도별 보장발전량(kWh) = 이건사업시설의 발전설비용량(kW)

× 해당 연도의 일평균보장발전시간(h)

× 해당 연도의 일수(days)

본 항에 따른 수탁자의 발전시간보장의무(자금보충의무 포함)는 (i) 공사도급계약상 시공사의 발전시간보장의무가 소멸하거나 (ii) 시공사가 부도, 회생, 파산 등의 제반 사유로 위 발전시간보장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적시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iii) 공사도급계약상 시공사가 발전시간보장의무를 적시에 이행하더라도 이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발전시간보장의무에 미달하는 부분(일평균 보장발전시간 또는 연도별 보장발전량에 미달하는 부분을 말한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수탁자는 위 (i), (ii)의 사유 시 해당 기간 이계약에 따른 발전시간보장의무 전부에 대해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위 (iii)의 사유 시 해당 기간 이계약에 따른 발전시간보장의무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자금보충의무

1. 수탁자는 발전시간보장이 적용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삼십(30) 영업일 이내에 해당 기간동안의 이건사업시설의 연도별 실제발전량(kWh)을 계산하고 해당 수치가 연도별 보장발전량(kWh)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위 1.목에 따른 계산결과 연도별 실제발전량이 연도별 보장발전량에 미달하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사십오(45)영업일 이내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자금보충금액(이하 “자금보충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자금보충금(원) = (연도별 보장발전량 – 연도별 실제발전량) × (해당 기간의 SMP 평균가격+ REC가격 × 가중치)

* REC가격은 (우송 태양광발전소: 179.987원/kWh - 해당 기간의 SMP 평균가격, 예리 태양광발전소: 156.491원/kWh - 해당 기간의 SMP 평균가격)을 적용함
* 단, 공급인증서매매계약 체결방식이 (SMP+1REC가격) 방식일 경우는 위 산식에서 공급인증서가중치를 곱하지 않고 자금보충금액을 산정함

1. 연도별 실제발전량이 연도별 보장발전량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당해 연도의 연도별 실제 매출액이 부록 II에 기재된 해당 연도의 기간별 기준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이건사업시설 전체의 매출액이 기준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함), 위탁자는 대리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의 본 호에 따른 자금보충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2. 본 호에 따른 자금보충의무는 공급인증서매매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급인증서매매계약이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본 조 제2항에 따른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항 공급인증서매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자금보충

최저발전시간보장기간 동안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급인증서매매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공급인증서매매계약의 원래 최저발전시간보장기간 중 잔여 최저발전시간보장기간에 대하여 아래 기재 산식과 같이 계산된 어느 분기의 보장발전량 미달시의 자금보충금액과 공급인증서 매매대금 부족분에 대한 자금보충금액의 합계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사십오(45)영업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으로서 공급인증서매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의무와 본 항에 따른 자금보충의무를 중복하여 부담하지 아니한다.

1. 보장발전량 미달 관련 자금보충금액

(해당 기간의 일평균 보장발전량 – 해당 기간의 일평균 실제발전량) × (계통한계가격(SMP)) × 해당기간의 일자

* 계통한계가격(SMP)은 해당 연도 평균 SMP를 적용하며, 평균 SMP는 해당 연도중 공급인증서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각 날의 공급인증서매매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 SMP의 산술평균값을 말함.

1. 공급인증서 매매대금 부족 관련 자금보충금액

해당 기간의 일평균 보장발전량 × {공급인증서(REC) 매매 기준가격 ×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 해당기간의 일자

* 계통한계가격(SMP)은 해당 연도 평균 SMP를 적용하며, 평균 SMP는 해당 연도중 공급인증서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각 날의 공급인증서매매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 SMP의 산술평균값을 말함.
* 단, 공급인증서 현물시장 또는 타 발전사업자와의 신규 계약을 통해 공급인증서판매수입이 있는 경우, 해당 공급인증서판매수입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 자금보충금액에서 차감함
* 단, 공급인증서매매계약 체결방식이 (SMP+1REC가격) 방식일 경우는 위 산식에서 공급인증서가중치를 곱하지 않고 자금보충금액을 산정함

제3항 공급인증서매매계약상 공급인증서 공급량 미달 관련 자금보충

계약기간 동안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위탁자가 공급인증서매매계약에 따라, 공급인증서 공급량 미달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과징금 기타 배상금이 부과되거나 공급인증서매매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의 지급을 청구 받는 경우, 수탁자는 위 청구일로부터 사십오(45)영업일 이내에 동 비용을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i) 공급인증서매매계약상 위탁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ii) 공급인증서 구매자가 해당 금액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본 항에 따른 손실보전의무는 면제된다. 단, 수탁자가 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으로서 공급인증서 공급량 미달 관련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당해 자금보충의무와 본 항에 따른 자금보충의무를 중복하여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항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상 가중치가 공급인증서예상가중치에 미달하는 경우 관련 자금보충

대출약정서의기간 동안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상 가중치가 공급인증서예상가중치(우송 태양광발전소: 1.026, 예리 태양광발전소: 1.025)에 미달하여 공급인증서판매수입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구일로부터 오(5)영업일 이내에 이로 인한 대출금 원금 상환부족분을 위탁자에게 일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해당 대출금 원금 상환부족분을 해당 기한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는 그 익일부터 수탁자가 위 대출금 원금 상환부족분 전액을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대출약정상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으로서 공급인증서예상가중치 미달 관련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당해 자금보충의무와 본 항에 따른 자금보충의무를 중복하여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항 이건사업시설의 상업발전 중단 또는 공급인증서 발급 중단시 자금보충

대출약정서의기간 동안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건사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업발전이 중단되거나 공급인증서 발급이 중단되어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대리금융기관의 요청일로부터 오(5)영업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해당 부족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는 그 익일부터 수탁자가 그 금액 전액을 지급한 날까지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대출약정상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으로서 이건사업시설의 상업발전 중단 또는 공급인증서 발급 중단에 따른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당해 자금보충의무와 본 항에 따른 자금보충의무를 중복하여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6항 최저시스템효율 유지

(가) 연도별 시스템총합효율 기준

수탁자는,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최저발전시간보장기간의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기간 말일까지, 시스템 효율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아래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시스템총합효율(Performance Ratio, PR)을 포함한 시스템효율 관련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스템 총합효율 =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판매대금 및 공급인증서(REC) 판매대금에 기초한 발전시간 / 일사시간\*) × 100

\*일사시간 = 태양전지모듈설치각도와 동일한 각도로 설치된 일사량계에 따른 일사기간(연간)

※단, 이건사업시설에 설치된 일사량계의 값이 일정시간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양사간에 합의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일사량 값을 이건사업시설과 가장 인접한 기상청의 기상대가 발표한 일사량 값에 부록V기재 경사면계수를 적용하여 대체한다.

(나) 최저시스템효율유지의무

수탁자는,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저발전시간보장기간의 종료로 인해 수탁자의 발전시간보장의무가 소멸한 경우, (ㄱ) 잔여 계약기간 동안 상기 조항에서 확인된 연도별 시스템 효율이 (i) 운영개시일부터 운영개시일이 속한 분기 다음 연도의 해당 분기 초일까지는 부록V기재의 최저시스템효율 수준 이상으로, (ii) 그 이후부터는 매 일(1)년마다 위 비율에서 영점오퍼센트(0.5%)씩 차감한 수준(이하“최저시스템효율”)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ㄴ)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인 위탁자가 공급인증서매매계약에 따라 약정된 공급인증서를 공급인증서 구매자에게 공급하지 못하여 위탁자에게 과징금 기타 배상금이 부과되는 경우, 수탁자는 대리금융기관의 요청일로부터 일십(10)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위탁자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단, 위 (ㄴ)의 의무는 위탁자에게 공급인증서매매계약상 해당 과징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수탁자가 최저시스템효율을 달성하는 경우 면제된다.

(다) 자금보충의무

1. 수탁자는 시스템총합효율보장이 적용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삼십(30) 영업일 이내에 해당 기간 동안의 이건사업시설의 시스템총합효율을 계산하고 해당 수치가 최저보장시스템효율에 미달하는지 아니면 초과하는지 여부와 함께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위 1.목에 따른 계산결과 시스템총합효율이 최저보장시스템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사십오(45) 영업일 이내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자금보충금액(이하 “자금보충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 최저보장시스템효율 하에서의 발전량(kWh)\* – 당해 연도 한국전력거래소 매전 발전량(kWh)) × [{공급인증서매매기준가격\*\* × 공급인증서가중치(우송태양광발전소: 1.026, 예리태양광발전소: 1.025)} + 계통한계가격(SMP)\*\*\*]

\*당해 연도 최저보장시스템효율 하에서의 발전량(kWh) = 설치용량(kW) × 이건사업시설의 해당 경사면 일사량(kWh/㎡) × 최저보장시스템효율

\*\*공급인증서(REC)매매기준가격 = 우송태양광발전소: 179.987원/kWh - 계통한계가격(SMP), 예리태양광발전소: 156.491원/kWh - 계통한계가격(SMP)

\*\*\*계통한계가격(SMP) = 해당 이건사업시설의 당해 연도 전력거래대금/해당 이건사업시설의 당해 연도 매전 발전량(kWh)

※단, 공급인증서매매계약 체결방식이 (SMP+1REC가격) 방식일 경우는 위 산식에서 공급인증서가중치를 곱하지 않고 자금보충금액을 산정함

1. 본 호에 따른 자금보충의무는 공급인증서매매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급인증서매매계약이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본 조 제2항에 따른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항 하자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에 발견된 이건사업시설의 하자를 보수하고, 동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탁자의 수입손실, 기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전단의 규정을 해함이 없이, 위탁자는 이건사업시설을 구성하는 물건 또는 이건사업시설의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탁자가 시공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하자보수청구권 기타 해당 하자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위탁자의 시공사에 대한 권리(이하 “하자보수청구권등”)를 수탁자에게 양도하거나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위 하자보수청구권등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수탁자가 본 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탁자는 동 초과금액을 시공사로부터 수령받은 즉시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항 관리운영계획

수탁자는 계약기간 동안 매 연도별로 관리운영계획(안)(위탁자가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작성될 것)을 마련하여 위탁자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관리운영계획의 해당 대상 연도말 종료일 일십(10)영업일 전까지 관리운영계획(안)을 위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위탁자가 위 관리운영계획(안)을 승인할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은 최종 확정되며, 수탁자는 최종적인 관리운영계획에 따라 관리운영의무를 이행한다. 본 항의 관리운영계획에 대하여 위탁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수탁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위탁자가 합리적으로 통보하는 기한 내에 위탁자가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한 관리운영계획안을 다시 제출하여 위탁자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항 이건사업시설의 검사

위탁자는 계약기간 동안 언제든지 이건사업시설의 하자 유무, 운영성과 요구수준의 준수 여부, 기타 이건사업시설의 상태와 운영에 대한 사항(이하 “검사대상”)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자의 비용으로 검사인(이하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검사인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검사대상을 검사하고 조사하며,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수탁자에게 통지한다. 위탁자는 검사인의 검사보고서상 적시된 내용에 따라 이건사업시설의 하자 유무, 운영성과 요구수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수탁자가 검사인의 검사보고서상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동 이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항 기타 관리운영 관련 준수사항

(가) 전력판매수입 및 공급인증서판매수입의 수령: 수탁자는 한국전력거래소 등과의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전력판매수입 및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공급인증서판매수입의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및 자료의 제출 등: 수탁자는 계약기간 동안 부록 III의 운영지침서에 따른 제반 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한다.

(다) 장비 및 자재: 수탁자는 이건사업시설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적절한 품질수준의 예비부품과 소모품을 구매하여 그 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정부 인허가, 면허 및 승인: 수탁자는 이건사업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정부 인허가, 면허 및 승인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한다. 또한, 수탁자는 이건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이계약 체결일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정부 인허가, 면허 및 승인 이외에 추가적으로 취득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로 하여금 해당 인허가, 면허 및 승인(전력판매수입 및 공급인증서판매수입의 수령을 위한 인허가, 면허 및 승인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타 통지의무

수탁자는 관리운영업무의 이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위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아래의 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업무매뉴얼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지시하여야 한다.

1. 이건사업시설의 손상
2. 이건사업시설과 관련한 인적, 물적 사고
3. 이건사업시설의 오염상황, 환경 관련 인허가의 취소나 환경 관련 법령의 위반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
4. 연간사업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수리비가 금 오백만원(￦5,000,000)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설비를 포함한 이건사업시설의 고장 또는 하자 발견/발생
5. 금액이 금 오백만원(￦5,000,000)을 초과하는 제3자로부터의 또는 그에 대한 청구
6. 이건사업시설 또는 관리운영업무에 대하여 제기되었거나 또는 제기될 가능성 있는 클레임 또는 소송이나 분쟁
7. 이건사업을 위한 인∙허가의 거부, 취소, 변경 또는 이건사업을 위한 인∙허가와 관련하여 제기되었거나 또는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클레임 또는 소송이나 분쟁
8. 관계기관과의 분쟁 또는 관계기관이 내린 벌금, 과태료 처분 및 기타 제재처분(동 제재처분에 대한 선행적 의사표시 포함)
9. 이건사업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또는 거래서류에 따라 위탁자가 대주,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통지, 보고 또는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사항
10. 정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신한 문서,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 대한 발신문서, 기타 정부 또는 관계기관과 이견이 있거나 협의 중인 제반 사항
11. 위탁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는 관리운영업무의 이행과 관련한 신규사항 또는 중요사항

## **제 5 조 (추가 계약의 체결 및 문서의 보관)**

제1항 수탁자가 이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당사자가 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체결한 거래서류를 변경,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가 위 계약을 위탁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하게 체결하거나 변경, 수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거래서류 기타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계약들로서 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각 계약서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등을 수령하여 보관, 관리하기로 한다.

## **제 6 조 (위탁자의 업무협조 및 자문기관의 선임)**

제1항 수탁자가 이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탁자의 협조가 필요하여 위탁자에게 이를 요청한 경우, 위탁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모든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가 이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무법인, 회계법인 기타 전문성을 가진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선임하여 필요한 자문을 받거나 이들로 하여금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 7 조 (관리운영수수료 등)**

수탁자가 이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제반 의무를 적법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자는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항 이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탁자는 계약기간 중 수탁자의 이계약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따른 관리운영수수료로 매 사업연도별로 이건사업시설의 설비용량 1MW당 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분기별로 분할 지급하기로 하며, 분기별 관리운영수수료를 해당 분기에 도래하는 마지막 영업일에 수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위탁자는, (i) 이계약의 계약기간이 분기 초일에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초일부터 분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ii) 이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일이 분기 말일에 종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기 초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각 실제 경과일수에 따라 위 분기별로 분할한 관리운영수수료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초일과 말일을 모두 산입하며, 일할 계산은 해당 기간에 속한 날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상기의 관리운영수수료에는 위탁자의공공요금(전기, 용수, 유류, 가스, 통신, 보안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대수선비, 전기안전관리자 및 보조원의 급여, 정기검사수수료 등 위탁자의 제세공과금, 보험료, 기타 위탁자가 부담하는 각종 벌금 및 과태료, 비용과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2항 수탁자는 위탁자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이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의 보전이나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제3항 위탁자는 수탁자가 경영효율 등으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보전하여야 할 관리운영수수료와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의 감액을 요구할 수 없다.

제4항 이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될 제반 수수료, 비용은 대출약정서에 따른 자금집행의 순서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하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 관리운영수수료, 비용의 지급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양해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위 자금집행의 순서를 비롯하여 대출약정상 관리운영수수료, 비용의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된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는 이자(제9조 소정의 연체이자를 포함함)가 면제되는 것으로 한다. 수탁자는 이와 관련하여 위탁자를 상대로 일체의 압류, 가압류, 소송 제기 등 일체의 강제집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제5항 대수선비

(가) 대수선비의 적립

위탁자는 대수선 업무와 관련하여, 대출약정의 조건에 따라 대수선비를 적립하고 유지하기로 하며,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대수선비적립금은 이건사업시설에 대한 대수선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대수선비 지급액은 지급 당시 대수선비적립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건사업시설에 대한 대수선비적립금은 대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리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최소유지적립금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이계약상 관리운영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위탁자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수탁자의 수익분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수수료 지급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대수선비적립금은 최소유지적립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수탁자의 수익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지급 시 이계약 제13조 제3항 제1호 제1목에 정한 이계약의 해지사유인 관리운영수수료의 미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로부터 해당 미지급된 재수탁자의 수익분에 대한 수탁자의 지급의무를 자동 승계하되(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부연하면, 위 자동 승계 시 해당 미지급된 재수탁자의 수익분에 대한 수탁자의 지급의무는 없다), 재수탁자의 수익분의 지급 지연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며(단, 연체이자의 부담 면제가 관련 법령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해당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재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해 가지는 해당 연체이자의 권리는 대주가 위탁자에 대해 가지는 금융관련서류상의 모든 권리에 대해 후순위(조건)에 해당하며, 재수탁자는 위탁자의 권리에 우선하여 위탁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없다), 재수탁자는 위탁자의 자금이 부족하지 않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경우에만 위탁자로부터 해당 미지급된 재수탁자의 수익분(연체이자 포함)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나) 대수선비의 지급

위탁자는 대수선비적립계좌에 예치된 대수선비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대수선비가 청구된 분기 관리운영수수료 지급일에 수탁자에게 해당 대수선비를 후불로 지급한다. 단, 대리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자가 승인하는 경우는 위의 절차 없이 지급이 가능하다. 이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으나 이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지급받지 못한 대수선비가 있는 경우, 이계약 해지 후에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관리운영계획에 기재된 사항 외에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하에 대수선을 수행한다.

1. 이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제출한 관리운영계획에 해당 연도에 대한 대수선비 계획이 명시되었을 것 (단, 긴급한 사정에 의해 예기치 못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록III 운영지침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위탁자에게 사전 보고된 사안에 한함)
2. 수탁자로부터 1.목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대수선이 이행되었을 것
3. 수탁자가 대수선 내역을 포함하여 2.목에 따른 대수선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것

## **제 8 조 (진술 및 보장)**

수탁자는 이계약 체결일 현재(단, 성질상 이계약 체결일 현재 진술 및 보장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에 대한 진술 및 보장이 가능한 시점 현재) 위탁자에게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을 진술 및 보장하며, 계약기간 동안 이를 항상 진실하고 정확한 것이 되도록 유지하기로 한다.

제1항 법인격 및 권한 등

(가) 수탁자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법인(주식회사)이다.

(나) 수탁자는 자신의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능력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다) 수탁자는 이계약 및 그와 관련한 모든 서류들(이하 “이계약등”)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능력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라) 수탁자는 이계약 및 그와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사회결의 등 내부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제2항 법령 및 기타 약정의 준수

수탁자에 의한 이계약등의 체결 및 이행은 (i) 수탁자에게 적용되는 법령(환경 관련 법령 포함)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ii) 수탁자의 정관에도 저촉되지 아니하며, (iii) 수탁자가 당사자인 어떠한 계약이나 약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계약 또는 약정상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3항 인∙허가 등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수행 및 이계약서등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정부 및 제3자의 제반 인∙허가 및 승인(환경 관련 인·허가 및 승인 포함)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제4항 계약의 적법성 및 유효성

이계약은 수탁자에 대하여 적법·유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집행가능하며 수탁자를 구속한다.

제5항 의무불이행사유의 부존재 등

수탁자에게 이계약등에 따른 어떠한 의무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수탁자는 이계약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제6항 분쟁

이 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위탁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소송, 조사, 수사, 중재, 행정절차 또는 기타 법적 절차나 분쟁도 수탁자에 대하여 현재 계속되고 있지 아니하고, 수탁자가 아는 한 제기될 우려도 없다.

제7항 지적재산권 등

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 및 사용권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나 부담 없이 유효하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제8항 법적 절차

수탁자와 관련하여 해산, 청산, 파산, 회생,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따른 기업구조개선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수탁자가 아는 한 개시될 우려가 없다.

제9항 정보의 제공 및 정확성

(가) 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신에 관한 중요한 일체의 정보를 위탁자에게 제공하였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교부한 위 정보는 동 정보가 제공된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완전하고 정확하다.

(나) 수탁자는 (i) 위탁자로부터 위탁자, 이건사업 및 이건사업시설에 대한 제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거나 취득하였으며, (ii) 위와 같이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건사업, 이건사업부지 및 이건사업시설의 법률상ㆍ사실상 현황, 상태 및 권리 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였고, (iii) 위 정보 및 자료의 주요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이 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사유나 사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한, 수탁자는 이건사업, 이건사업부지 및 이건사업시설의 법률상ㆍ사실상 하자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시공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상의 권리를 위탁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다) 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를 검토하였으며, 계약기간 동안 이건사업 및 이건사업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업무 중 이 계약에서 정한 위탁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만 수행의무를 부담함을 확인한다.

제10항 법령 위반사항의 부존재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법령 위반 사실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11항 임직원의 고용 등

(가) 수탁자는 거래서류상 달리 명시하거나 관련 법령상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위하여 고용하는 모든 직원은 수탁자 소속의 직원임을 확인한다.

(나)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임직원에 관한 급여, 퇴직금, 실업 혜택, 근무시간, 근무환경, 복지, 이와 관련된 모든 세금이나 비용 지급 등 수탁자의 임직원의 고용 및 사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수탁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위탁자는 동 임직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급여, 퇴직금 및 실업혜택 포함)도 부담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2항 거래서류의 인지

(가) 수탁자는 위탁자가 대주와 체결한 대출약정상 (i) 인출 시 요구되는 운영 관련 서류, (ii) 대출약정에 따른 위탁자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이 계약상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권리 또는 계약상 지위의 양도담보 설정, (iii) 시설 운영 관련 보험, (iv) 위탁자에게 요구되는 운영 관련서류 제출의무, (v) 인출선행조건 서류 중 운영 관련 서류에 있어서 수탁자와 관련된 사항의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 (vi) 대출약정상 각 예금계좌의 개설, 관리, 자금 집행 방법 및 순서를 확인하였고 이를 숙지하고 있다.

(나) 수탁자는 이 계약 및 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대출약정의 제반 조건들과 관련이 있는 한, 수탁자 자신의 의무와 책임인 경우에는 직접 그리고 위탁자의 의무와 책임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동 제반 조건들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일체의 지원과 협조를 제공할 것이다.

## **제 9 조 (연체이자)**

제1항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전력판매수입 및/또는 공급인증서매매대금이 차감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자는 당해 차감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전력판매수입 및/또는 공급인증서매매대금(이하 “미지급대금”)의 원지급기일로부터 위탁자가 당해 미지급대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받는 날까지 미지급대금에 대하여 대출약정상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이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이계약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때에는, 해당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위 제1항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명확히 하면, 제7조 제4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될 제반 수수료, 비용이 미지급되는 경우 위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는 면제된다.

## **제 10 조 (민원)**

이건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환경민원 포함)은 수탁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한다. 단, 설계 및 시공상의 중대한 하자로 발생한 민원 등 수탁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민원은 위탁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한다.

## **제 11 조 (손해배상)**

제1항 수탁자는 본인이 직접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이나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계약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수탁자가 이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거래서류를 준수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포함) 그로 인하여 위탁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수탁자가 이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거래서류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위탁자에게 거래서류를 위반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도 포함함)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항 이계약상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이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 이건사업의 거래서류 등으로부터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책임 및 손해로부터 위탁자를 면책시켜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제3자에게 채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거나 비용 등을 지급하여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에게 이러한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3항 위탁자는 본인이 직접 또는 위탁자의 임•직원이나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계약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항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이계약에 규정된 상대방 당사자의 권리(이계약의 해지권 포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항 이계약상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책 당사자는 해지 사유 또는 해지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되거나 거래서류상의 상대방의 책임 또는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는 계약해지를 이유로 귀책 당사자의 본 조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제 12 조 (불가항력사유 발생시의 처리)**

제1항 불가항력사유 및 그 효과

(가) 이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어느 당사자가 이계약상 자신의 의무이행을 지연하게 되거나 불이행하게 되더라도 이계약에 대한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단,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의무 이행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하 “불가항력당사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불가항력당사자는 지체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불가항력사유의 발생 사실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불가항력당사자가 의무 이행을 재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당사자들은 불가항력사유 발생의 통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도달한 후 조속히 불가항력사유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건사업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사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라)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의무이행의 중단은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과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불가항력당사자는 자신의 의무이행 불능을 치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항 불가항력사유의 영향 제거 등

(가) 수탁자는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불가항력사유의 영향을 제거(원상회복 의무를 포함함)하여야 한다. 단, 위 기간은 위탁자가 이계약에 따라 가입하는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상 부보대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계약기간 중,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건사업시설의 복구 등과 관련한 추가비용 또는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는 위탁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및/또는 보상을 받은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해당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수탁자는 그 자금으로 이건사업시설을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비용이 보험금 및/또는 보상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3항 불가항력사유에 따른 지급

(가)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건사업시설이 파손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이건사업시설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나) 위 (가)호의 해당사유로 인하여 위탁자가 보험회사, 관련 관청 기타 제3자로부터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위탁자는 그러한 보험금 또는 보상을 받은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이를 지급하되 대주의 위탁자에 대한 대출원리금(수수료, 연체이자 원금 포함), 불가항력사유 제거를 위하여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 및 운영비용 등 위탁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차감한다.  위탁자는 보험계약상 자기부담금 또는 공제금액(Deductible)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 위 (가)호 및 (나)호의 규정은 금융관련서류에 의한 대주들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 **제 13 조 (계약의 해지 및 종료)**

제1항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이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진술 및 보장 내용이 중대한 점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점에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다만, 위탁자가 그 위반이 시정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탁자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통지 받은 후에도 삼십(3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이계약 제4조에 정한 발전시간보장의무, 최저시스템효율유지의무 또는 각 자금보충의무 위반은 수탁자가 이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유에 해당함)
2. 수탁자에게 다음의 사유(이하 “파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파산, 회생절차, 또는 협조융자, 부도유예, 채무재조정, 사적 화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의 기업구조조정절차 또는 위 절차 등과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때;
4. 수탁자가 이러한 절차를 위한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관리인 등 직무수행자의 선임을 신청하거나 그 선임에 동의한 때;
5. 제3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위에 기재된 절차의 개시 신청 또는 직무수행자의 선임을 신청하고 그 신청이 육십(60)일 이내에 기각 또는 각하되지 않은 때;
6. 수탁자에 대하여 해산 또는 청산의 결의가 있거나, 법원에 그 해산 또는 청산을 위한 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
7. 수탁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된 때; 또는
8. 수탁자가 제세공과금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발행의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된 때.
9. 위탁자가 발전사업자 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적법, 유효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상실할 경우
10. 수탁자가 이계약 또는 자신이 당사자인 거래서류를 위반하고 그 위반이 이건사업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사업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의 개시를 삼십(30)일 이상 지연하거나 삼십(30)일 이상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12. 기타 위 각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건사업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13.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이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
14. 단위운영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 언제든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리금융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

제2항 위탁자의 해지사유 통지 이후의 조치

1. 위탁자가 본 조 제1항에 따라 이계약의 해지 통지를 한 경우, 위탁자는 거래서류를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수탁자를 대신하여 이건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할 대체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체수탁자에게 이계약에 따라 수탁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 기타 자료들을 신속하게 이전하여야 하며, 이전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게 되는 시점까지 수탁자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전을 받은 자에게 협조하는 등으로 업무이전에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항 수탁자의 계약해지

1.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리운영수수료의 지급을 4회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음으로써(이와 같은 미지급이 연속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관리운영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동 의무불이행에 관한 통지를 수령한 이후에도 의무불이행 상태가 삼십(30)일 이상 계속될 때
   2. 재수탁자에게 파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위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관리운영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
   4. 위탁자가 이계약 또는 자신이 당사자인 거래서류를 위반하고 그 위반이 이건사업시설의 관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기타 위 각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건사업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이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
2. 제13조 제3항의 각호에 의하여 이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위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수수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또한 수탁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항 재수탁자의 수탁자 지위 자동승계

1.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계약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해지되는 경우, 재수탁자는 동 해지일(이하 “수탁자지위승계일”)부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수탁자의 지위를 자동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이 경우 재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이계약 제4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최저발전시간보장기간을 이계약의 잔여 계약기간까지로 연장하여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재수탁자는 수탁자지위승계일부터 이계약의 종료시까지 위탁자에 대하여 이계약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저발전시간보장의무 및 각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한다.), 위탁자와 기존 수탁자(이하 본 항에서는 “기존수탁자”)는 위 지위 승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며, 기존수탁자는 수탁자지위승계일에 이계약상 수탁자의 지위에서 탈퇴되고, 기존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수탁자와 위탁자 간 이계약의 종료 및 수탁자지위승계에 따른 조치는 아래 제5항에 따른다.
2.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계약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해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수탁자는 이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계약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최저발전시간보장기간을 이계약의 잔여 계약기간까지로 연장하여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받아, 위탁자에게 잔여 계약기간 동안 이계약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저발전시간보장의무 및 각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한다. 본 호에 따른 재수탁자의 잔여 계약기간 동안 최저발전시간보장의무 및 각 자금보충의무는 수탁자의 최저시스템효율 보증의무(자금보충의무 포함)와는 별도로 위탁자에 대한 독립된 의무를 구성하되, 재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잔여 계약기간 동안 이계약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저발전시간보장의무 및 각 자금보충의무를 전부 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행 범위 내에서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최저시스템효율 보증의무(자금보충의무 포함)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i) 재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잔여 계약기간 동안 이계약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저발전시간보장의무 및 각 자금보충의무를 일부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이행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최저시스템효율 보증의무(자금보충의무 포함)를 이행한 것으로 보나, 그 일부 이행이 되지 아니한 범위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여전히 최저시스템효율 보증의무(자금보충의무 포함)를 부담하고, (ii) 본 제2호 및 위 (i)목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는 위 잔여 계약기간 동안, 수탁자에게 최저시스템효율 보증의무(자금보충의무 포함)를, 재수탁자에게 최저발전시간보장의무 및 각 자금보충의무를 각 이행할 것을 중첩적 또는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재수탁자는 이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위 의무의 면책을 주장하거나 다른 당사자의 의무의 선이행청구나 주장 등 민법상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과 유사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탁자의 최저시스템효율 보증의무(자금보충의무 포함)와 재수탁자의 최저발전시간보장의무(자금보충의무 포함)에 관한 청구금액이 중첩되는 경우 재수탁자의 최저발전시간보장의무(자금보충의무 포함)가 수탁자의 최저시스템효율 보증의무(자금보충의무 포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항 계약 종료시의 조치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 등 사유를 불문하고 이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관리운영수수료 등이 있는 경우, 본 항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이행과 동시에 이를 지급한다. 이 경우 아래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계약 종료에 대하여 책임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1. 아래 3.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는 이건사업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과 관련이 없는 수탁자의 설비, 물품과 인원을 이건사업시설로부터 철수시키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가능한 상태로 계약기간 중 설치, 취득한 설비, 물품 등을 포함한 이건사업시설을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건사업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수탁자가 보유하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및 그에 따른 정보의 이용권을 위탁자에게 부여한다.
2. 위탁자는 수탁자로부터 이건사업시설을 인도받기 위하여 이를 검사하고,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자는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보수나 대체를 하고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계약에 따라 수탁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 기타 자료들을 신속하게 이전하여야 하며, 이전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게 되는 시점까지 수탁자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전을 받은 자에게 협조하는 등으로 업무이전에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4. 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하도급계약 및 기타 이건사업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체결한 계약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위탁자가 이건사업시설 및 사업부지에 있는 시설, 설비, 기계, 기구, 도구, 소모품, 기타 물품을 조사하는 것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이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전에 발생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이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단, 당사자간 서면 합의한 경우 합의한 시점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 **제 14 조 (기타)**

제1항 비밀유지

당사자들(본 항에서는 재수탁자 포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그리고 이계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삼(3)년 동안은 이계약의 조건과 이계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본 항에서는 재수탁자 포함)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1. 다른 당사자들 또는 그 계열회사들의 과실 없이 그 정보가 이미 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거나 공지의 사실로 전환된 경우
2. 그 정보가 어느 당사자 또는 그 계열회사에게 알려지거나 공개되기 이전에 그 당사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이미 그 정보를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그 공개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 제3자에 의하여 어느 당사자 또는 계열회사에게 적법하게 공개 된 경우
4. 당사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문서화한 경우
5. 해당 정보의 공개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경우
6. 해당 정보의 공개가 해당 당사자의 법률자문 혹은 금융자문을 위한 경우

제2항 통지

이계약서상의 최고 또는 통지는 서면으로 다음의 주소지 또는 각 당사자(본 항에서 재수탁자 포함)가 상대방(본 항에서 재수탁자 포함)에게 서면 통지로써 지정하는 기타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인편 또는 우편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팩스,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위탁자에게: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2, 10층(대치동, 홍우빌딩)

참 조: 전략기획실 정현 실장

팩시밀리: 02-556-1502

전 화: 02-556-1504

이 메 일: [richard@ctreng.com](mailto:richard@ctreng.com)

수탁자에게: 한화에너지 주식회사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케이티앤지 세종타워 4층

참 조: O&M 사업팀 김대중 과장

팩시밀리: 044-850-3519

전 화: 044-850-3588

이 메 일: [daejoong.kim@hanwha.com](mailto:daejoong.kim@hanwha.com)

재수탁자에게: 주식회사 센트럴이엔지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2, 10층

(대치동, 홍우빌딩)

참 조: 전략기획실 정현 실장

팩시밀리: 02-556-1502

전 화: 02-556-1504

이 메 일: [richard@ctreng.com](mailto:richard@ctreng.com)

모든 통지는 인편으로 교부될 경우에는 그 교부일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일에,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에 대한 적절한 확인이 있는 경우 발송한 때에, 각 수령된 것으로 본다.

제3항 양도

당사자들은 이계약상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재수탁자의 이계약상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위탁자의 서면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제4항 지적재산권

수탁자 또는 그 임∙직원이 이계약상 의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는 경우, 이는 수탁자의 소유로 한다. 단, 수탁자는 위탁자나 새로운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계인이 이건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권리를 부여하며, 위탁자나 새로운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계인은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5항 효력발생

이계약은 이계약서상에 그 체결일로 명시된 일자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항 준거법

이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7항 분쟁의 해결

이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가능한 한 당사자들간에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당사자들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이나 이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 소송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위탁자와 재수탁자 사이에 적용되는 이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있어 본 항에서의 당사자들은 위탁자와 재수탁자를 말한다.

제8항 상계 및 공제

(가)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이계약에 따른 의무(금원 지급의무를 포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자는 해당 의무 이행시까지 이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관리운영수수료 전액의 지급을 별도의 지연이자 발생 없이 유보하거나, 이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관리운영수수료에서 해당 금원 상당액을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다.

(나) 위 (가)호의 규정을 해함이 없이, 위탁자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제반 금원(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채무를 포함함)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제반 금원(이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관리운영수수료를 포함함)에서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다.

1. 단, 본 항 (가)호 및 (나)호에도 불구하고, 재수탁자가 이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제반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이행 및 지급 금원의 범위 내에서만 예외로 한다.

제9항 계약의 수정

이계약은 거래서류의 변경 또는 그 해석의 변경이나 다른 원인으로 이계약의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변경하기로 하되, 그 변경은 당사자 사이의 서면합의에 의하기로 한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재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이계약에 따른 의무에 대한 변경의 경우 재수탁자의 서면 합의도 요구된다.

제10항 해석

1. 이계약에서 모든 계약, 약정, 협약 및 문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규정 등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변경 및 이를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이계약에서 달리 규율하지 아니하는 한, 위탁자, 수탁자, 재수탁자, 시공사, 대주, 대리금융기관, 기타 이계약에서 언급된 자는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다음 장에)*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계약의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권한 있는 자로 하여금 이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재수탁자는 사본을 보관하기로 한다.

**위 탁 자** :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

대표자 사내이사 정현

\_\_\_\_\_\_\_\_\_\_\_\_\_\_\_\_\_\_\_\_\_\_\_

직위 :

성명 :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계약의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권한 있는 자로 하여금 이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재수탁자는 사본을 보관하기로 한다.

**수 탁 자 : 한화에너지 주식회사**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케이티앤지 세종타워 4층

대표이사 정인섭

\_\_\_\_\_\_\_\_\_\_\_\_\_\_\_\_\_\_\_\_\_\_\_

직위 :

성명 :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계약의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권한 있는 자로 하여금 이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재수탁자는 사본을 보관하기로 한다.

**재 수 탁 자 : 주식회사 센트럴이엔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2, 10층(홍우빌딩)

대표자 사내이사 정재건

\_\_\_\_\_\_\_\_\_\_\_\_\_\_\_\_\_\_\_\_\_\_\_

직위 :

성명 :

부록 I

**이건사업부지 및 이건사업시설 내역**

1. 이건사업부지

| **구분** | **주소** | **설치면적(㎡)** |
| --- | --- | --- |
| **우송태양광발전소** |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 | [9,863] |

1. 이건사업시설

| **구 분** | **내 용** |
| --- | --- |
| **발전소명** | [우송]태양광발전소 |
| **소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 |
| **시설용량** | [765.90]Kw |
| **경 사 도** | [평지]° |
| **모듈** | 모델명: [JSMM370A]  제조사: [JSPV] |
| **모듈성능보증** | [최초1년 97.0%,, 2년~25년차 0.65%감소, 25년차 81.4% 이상의 출력성능 보증] |
| **인버터** | 모델명: [HS-P500GLO]  제조사: [효성] |
| **발전시스템** | [고정형] |
| **시공사** | ㈜센트럴이엔지 |
| **관리운영사** | 한화에너지 주식회사 |
| **발전시간보장** | * 3년간 일평균 삼점오(3.5)시간 해당 발전시간 보장(연 0.5% 효율감소적용) * 3년 이후 관리운영사의 최저시스템효율유지의무로 전환(3년째 및 이후 매년 관리운영위탁계약 유지 여부 협의) (단, 관리운영계약의 유지 여부와 별개로, 대출금 전액 상환 시까지 재수탁사가 일평균 삼점오(3.5)시간 해당 발전시간 보장(연 0.5% 효율감소적용) |
| **하자보수**  **이행보증** | 준공일(발전소별)로부터 3년  공사도급금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

부록 I

**이건사업부지 및 이건사업시설 내역**

1. 이건사업부지

| **구분** | **주소** | **설치면적(㎡)** |
| --- | --- | --- |
| **예리태양광발전소** |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예리 산 64] | [8,382] |

1. 이건사업시설

| **구 분** | **내 용** |
| --- | --- |
| **발전소명** | [예리]태양광발전소 |
| **소재지** | [경상남도 창군 도천면 예리 산 64] |
| **시설용량** | [797.04]Kw |
| **경 사 도** | [남향 2도,14도,평지]° |
| **모듈** | 모델명: [JAM72S10-405MR]  제조사: [JA솔라] |
| **모듈성능보증** | [최초1년 97.0%,, 2년~25년차 0.65%감소, 25년차 81.4% 이상의 출력성능 보증] |
| **인버터** | 모델명: [HS-P500GLO]  제조사: [효성] |
| **발전시스템** | [고정형] |
| **시공사** | ㈜센트럴이엔지 |
| **관리운영사** | 한화에너지 주식회사 |
| **발전시간보장** | * 3년간 일평균 삼점오(3.5)시간 해당 발전시간 보장(연 0.5% 효율감소적용) * 3년 이후 관리운영사의 최저시스템효율유지의무로 전환(3년째 및 이후 매년 관리운영위탁계약 유지 여부 협의) (단, 관리운영계약의 유지 여부와 별개로, 대출금 전액 상환 시까지 재수탁사가 일평균 삼점오(3.5)시간 해당 발전시간 보장(연 0.5% 효율감소적용) |
| **하자보수**  **이행보증** | 준공일(발전소별)로부터 3년  공사도급금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

부록 II

**기간별 기준매출액**

|  |  |  |
| --- | --- | --- |
| **운영연도** | **보장발전량(Kwh)** | **기준매출액(원)** |
| 1차년도 | 1,981,176 | 332,822,559 |
| 2차년도 | 1,971,193 | 331,145,319 |
| 3차년도 | 1,961,210 | 329,468,079 |
| 4차년도 | 1,951,226 | 327,790,839 |
| 5차년도 | 1,941,243 | 326,113,598 |
| 6차년도 | 1,931,260 | 324,436,358 |
| 7차년도 | 1,921,276 | 322,759,118 |
| 8차년도 | 1,911,293 | 321,081,878 |
| 9차년도 | 1,901,310 | 319,404,638 |
| 10차년도 | 1,891,327 | 317,727,398 |
| 11차년도 | 1,881,343 | 316,050,157 |
| 12차년도 | 1,871,360 | 314,372,917 |
| 13차년도 | 1,861,377 | 312,695,677 |
| 14차년도 | 1,851,393 | 311,018,437 |
| 15차년도 | 1,841,410 | 309,341,197 |
| 16차년도 | 1,831,427 | 307,663,957 |
| 17차년도 | 1,821,444 | 305,986,716 |
| 18차년도 | 1,811,460 | 304,309,476 |
| 19차년도 | 812,114 | 131,950,287 |
| 20차년도 | - | - |
| **합계** | **34,945,842** | **5,866,138,606** |

주1) 최초 운영연도(1차년도)는 [운영개시일](단, 대출약정서상 최초인출일 이전에 이건사업시설의 운영개시일이 도래한 경우 최초인출일을 말함. 이하 부록 II에서 동일함.)로부터 기산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그 이후(2차년도~20차년도)에는 직전 운영연도의 말일로부터 각 일(1)년의 기간을 말한다. 역년으로 계산하며,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한다.

주2) 대출약정서에 따른 최초인출일 이후 대주와 협의하여 수정이 가능하며, 제15조 제3항의 수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위 협의로써 이계약 부록 II를 대체하는 것으로 함.

부록 III

**운영지침서**

1. 설비의 점검 및 정비
   1. 점검 관리
      1. 주간점검
2. 개요 : 설비의 작동 상태에서 시각, 청각, 후각을 통하여 인버터, 수배전 판넬 등 이상 유무 확인 상태 확인 및 보수
3. 주요 설비 점검 내용

|  |  |  |
| --- | --- | --- |
| **설비 구분** | **점검 내용** | **비고** |
| 인버터 | * 인버터 판넬 외부 LED 표시 작동상태 확인 * 배기 Fan 작동상태 점검 * 볼트류 등의 조임 이완여부 확인 점검 * Main Combine Box 계기판 작동 상태 확인 등 |  |
| 수배전반 | * 가동부 등에 연결 되는 전선의 절연피복 손상 여부 확인 점검 * 쥐, 곤충 등의 침입 흔적 여부 확인 및 예방 * 접지선의 부식 또는 단선 확인 점검 * 단자대 조임부의 이완 및 절연물 등의 균열, 파손 여부 확인 점검 * 각 판넬의 개폐표시기의 표시 상태 정상여부 확인 점검 등 |  |
| 구조물 | * 금속 부분의 녹이나 변형 상태이상 확인 점검 * 나사의 볼팅 상태 점검 확인 * 상부 구조물의 변형 및 이상 유무 확인점검 |  |
| 모듈 | * 모듈 Connection 상태 확인 점검 * 모듈의 파손부위는 없는지 확인점검 |  |

* + 1. 월간 점검

1. 개요 : 설비의 가동 상태 혹은 정지 상태에서 테스기를 이용한 전압 전류 체크 등 정상작동 상태 확인 점검
2. 주요설비 점검 내용

|  |  |  |
| --- | --- | --- |
| **설비 구분** | **점검 내용** | **비고** |
| 인버터 | * 인버터 내부 PCB PCB Room 점검 확인 * 부스바 전원 볼팅 상태 확인 점검 * 스위치 작동 상태 테스트 및 점검 * 절연 저항값 측정 등 |  |
| 수배전반 | * 전압 전류계 작동 상태 점검 * LV-R 전자접촉기 동작상태 확인 및 테스트 * 접지상태 측정 및 점검 확인 * 저압 T.R 중성선 및 접지상태 확인 등 |  |
| 구조물 | * 금속 부분의 녹, 변형상태 이상 확인 점검 * 방수 상태 확인 점검 |  |
| 모듈 | * Solar Cable의 열화 및 손상여부 확인점검 * Smart Connect 작동상태 확인 점검 * Module 지지 Bar 고정상태 및 파손 여부 확인 점검 |  |

* + 1. 계절별 중점 점검

1. 개요 : 계절별 특성에 맞게 중점점검 사항을 지정하여 확인 점검
2. 주요 점검 내용

|  |  |  |
| --- | --- | --- |
| **계절** | **주요 점검 사항** | **비고** |
| 봄, 가을 | * 구조물 부식 방지 징크 작업 * 황사 대비 모듈 상태 점검 * 해빙기 토사 및 구축물 점검 관리 |  |
| 여름 | * 태풍피해 예방을 위한 구조물 및 모듈의 고정 상태 확인 * 인덕터, 변압기, 전기실 등 온도 상승 예방을 위한 배기 펜, 온도 센서 등 점검 관리 * 인버터, 수배전반 등 내부 곤충 침투 예방강화 |  |
| 겨울 | * 폭설피해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 모듈 및 통신 케이블 고정 상태 점검 관리 |  |

* 1. 정비관리
     1. 계획 정비 : 설비의 확장 개.보수 등 사업주와 협의하여 수행
     2. 수시 정비 : 설비의 고장 및 점검결과에 따라 실시

1. 운영보고서 관리(제출)
   1. 월간 보고서
      1. 보고 주기 : 매월 1회(익월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2. 보고 내용 : 발전 현황, 가동율, 발전 효율, 주간 점검 일지
   2. 운영 보고서
      1. 보고주기 : 매분기 1회(분기 다음 월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2. 보고내용 : 분기 발전 현황, 가동율, 발전 효율, 월간 점검 일지, 보수 및 수리 내용

부록 IV

**대수선 기준**

하기 사항에 대해서는 대수선에 포함한다.

1. 대수선 작업으로 인한 배선 및 부품교체

2. 공급 업체의 표준제품에 대한 수리 및 교체

3. 불가항력으로 인한 수리 및 교체

4. 설비 추가 및 증설

5. 설비 성능에 이상이 없으나 위탁자의 교체 요청 시

6. 기타 다음 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수선에 해당하는 사항

|  |  |  |  |  |
| --- | --- | --- | --- | --- |
| 구 분 | 내 역 | 소수선 | 대수선 | 비 고 |
| 모  듈 | 교체(2장 이하:폐기 모듈 처리 포함) | ○ |  | 3장 이상/지상 2미터 이상-대수선, 모듈 공급 기준 |
| 접속단자(모듈 MJB단자)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스트링 지락 검출(모듈 - 접속반 간) | ○ |  | 스트링 2개 이상-대수선 |
| 접지단자 교체/수리 | ○ |  | 30개 이상(신규 설치 포함)-대수선 |
| 구  조  물 | 부식 방지 도포(부분) | ○ |  |  |
| 부식 방지 도포(전체) |  | ○ |  |
| 고정볼트/너트 교체(부분) | ○ |  | 일괄 교체-대수선 |
| 기초 구조물(콘크리트 등) 보수/교체 |  | ○ | 단순 수리-소수선 |
| 구조물 보강/교체/복구 |  | ○ | 단순 수리-소수선 |
| 접지단자 교체/수리 | ○ |  | 20개 이상-대수선 |
| 가변(해당 시) |  | ○ | 계약 상 포함 기준 |
| 정밀안전진단 |  | ○ | 외부진단 기준, 자체안전진단-소수선 |
| 접  속  반 | 퓨즈 교체 | ○ |  | 교체품 포함 |
| 차단기 교체 |  | ○ | 교체품 포함 |
| Busbar 교체/보수 |  | ○ | 교체품 포함 |
| SPD 교체(단상/직류 기준) | ○ |  | 교체품 포함 |
| Control Board 교체 |  | ○ | 교체품 포함, 단순 수리-소수선 |
| 외함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외함 부분 도색 | ○ |  |  |
| Fan 교체 | ○ |  | 교체품 포함 |
| Dust Filter 교체 | ○ |  | 교체품 포함 |
| Analog Meter 단순수리(전류계/전압계) | ○ |  | 교체-대수선 |
| Digital Meter 단순 수리(전류계/전압계) | ○ |  | 교체-대수선 |
| 내부 볼트/너트 교체 | ○ |  |  |
| 내부 배선 보수 | ○ |  | 접속반-인버터 간 지락 검출-대수선 |
| 내부 청소 | ○ |  |  |
| 기초 구조물(콘크리트 등) 보수/교체 |  | ○ | 단순 수리-소수선 |
| 명판 부착 | ○ |  |  |
| 기타 설비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전  선 | 전선 교체(외부) |  | ○ |  |
| 전선 단순 수리 | ○ |  | 외피 등 |
| 전선관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전선관 고정용 부품(볼트/너트) 단순 수리 | ○ |  | 지면 2미터 이상/100개 이상-대수선 |
| 전선관 고정용 부품(케이블타이) 단순 수리 | ○ |  | 지면 2미터 이상/100개 이상-대수선 |
| 전선관 이설 설치 |  | ○ | 위탁자 책임 |
| 인  버  터 | Fan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Filter 교체 | ○ |  | AS 미실시 기준 |
| 차단기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Control Board(IGBT Board 등)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Inductor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SPD 교체 |  | ○ | 단순 수리-소수선 |
| 내부 볼트/너트 교체 | ○ |  |  |
| 내부 배선 교체 |  | ○ |  |
| 기초 구조물(콘크리트 등) 보수/교체 |  | ○ | 단순 수리-소수선 |
| 명판 부착 | ○ |  |  |
| 내부 청소 | ○ |  | 유상 AS-대수선 |
| 기타 설비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수  배  전  반 | Fan 교체/수리 | ○ |  |  |
| Filter 교체/수리 | ○ |  |  |
| Lamp 교체 | ○ |  | 등기구 교체 포함 |
| Aux Relay 교체/수리 | ○ |  |  |
| 외함용 Space Heater 교체/수리 | ○ |  |  |
| THERMOSTAT 교체/수리 | ○ |  |  |
| 소형 Fuse 교체 | ○ |  |  |
| 외함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외함 부분 도색 | ○ |  |  |
| 차단기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CT/PT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Protection Device 단순 수리 | ○ |  | 3상 SPD/ELD/Digital Relay, 교체-대수선 |
| Digital Meter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Analog Meter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Busbar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Main Power Fuse 교체 |  | ○ |  |
| 내부 볼트/너트 교체 | ○ |  | 활선작업 시-대수선 |
| 내부 배선 교체 |  | ○ | 단순 수리-소수선 |
| Battery/ Battery Charger 교체 |  | ○ | 단순 수리-소수선 |
| 소내용 변압기 교체/수리 |  | ○ |  |
| 기초 구조물(콘크리트 등) 교체/수리 |  | ○ |  |
| 명판 부착 | ○ |  |  |
| 정밀안전진단 |  | ○ | 외부진단 기준, 자체안전진단-소수선 |
| 전기설비정기검사 | ○ |  | 조건부합격/불합격-대수선 |
| 그늘용 구조물 교체/보수 |  | ○ | 단순 수리-소수선 |
| 내부 청소 |  | ○ | (특)고압전공 기준 |
| 기타 설비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변  압  기 | 설비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Teme. Detactor&System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Indicator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Oil 교체(유입 변압기) |  | ○ | 산가 측정-소수선 |
| 기초 구조물(콘크리트 등)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실리카겔 교체(유입 변압기) | ○ |  |  |
| 연계  설비 | 설비 교체/수리/이설 |  | ○ | 단순 수리-소수선 |
| 가지치기 |  | ○ |  |
| 조류 접근 방지 설비 설치 |  | ○ | 바람개비 기준 |
| 모니  터링 | CCTV 카메라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DVR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통신설비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기상센서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외함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 기상센서 검교정 |  | ○ | 신규 설치-대수선 |
|  | 모니터링 서버 유지 관리 |  | ○ | 신규 설치-대수선 |
|  | 현장 긴급 출동(자체 출동 기준) | ○ |  | 월 3회 기준, 초과 시 출장비 청구 |
| 휀  스 | 볼트/너트 조임 및 교체 | ○ |  |  |
| 휀스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안전 표지판 교체 및 부착 | ○ |  |  |
| 휀스 기초 단순 수리 | ○ |  | 교체-대수선 |
| 전  기  실 | Lamp 교체 | ○ |  | 등기구(1개까지) 교체 포함 |
| 공조 Fan/Filter 교체 | ○ |  | 신규 설치-대수선 |
| 모기장 보수 | ○ |  | 신규 설치-대수선 |
| Dust Filter | ○ |  | 신규 설치-대수선 |
| 잠금장치(열쇠) 교체/설치 | ○ |  | 자동장금장치의 교체/설치-대수선 |
| 건물 보수 |  | ○ | 단순 수리-소수선 |
| 접지공사 추가 실시/보강 |  | ○ | 단순 수리-소수선 |
| 토  목 | 우수로 보수/추가 |  | ○ | 단순 수리-소수선 |
| 옹벽 보수/추가 |  | ○ | 단순 수리-소수선 |
| 맨홀 보수/추가 |  | ○ | 단순 수리-소수선 |
| 지붕 방수 공사 |  | ○ | 단순 수리-소수선 |

※ 모듈 세척 작업 : 별도 협의

※ 그늘용 구조물 설치 작업 : 별도 협의

상기 외 사항에 대한 설비 혹은 부품의 수리/교체는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부록 V

**(발전소별) 경사면계수 및 대수선비적립금 등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No.** | **위탁자 명** | **발전소 명** | **설비용량**  **(kW)** | **경사면계수** | **대수선비적립금**  **(백만원)** | **최소유지적립금**  **(백만원)** | **최저시스템효율(PR)** |
| 1 |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 우송태양광발전소 | 765.90 | 1.10 | 92 | 87 | 79.68% |
| 예리태양광발전소 | 797.04 | 1.08 | 81.44% |
| 2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6호㈜ | 안동1호망호리태양광발전소 | 938.08 | 1.08 | 55 | 52 | 79.04% |
| 3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0호㈜ | 산청하이일호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 933.12 | 1.07 | 56 | 53 | 81.53% |
| 4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1호㈜ | 산청하이이호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 933.12 | 1.07 | 56 | 53 | 82.02% |
| 5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2호㈜ | 산청하이오호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 933.30 | 1.05 | 57 | 53 | 71.10% |
| 6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3호㈜ | 산청하이육호태양광발전소 | 933.30 | 1.05 | 57 | 53 | 67.52% |
| 7 | 센트럴태양광발전소4호㈜ | ㈜현대태양광 | 748.66 | 1.06 | 103 | 97 | 80.18% |
| 정선하늘5호 태양광발전소 | 903.78 | 1.08 | 78.70% |
| 8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4호㈜ | 금성 태양광발전소 | 925.45 | 1.08 | 58 | 54 | 83.24% |
| 9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5호㈜ | ㈜혜성에너지 | 997.56 | 1.09 | 49 | 46 | 79.08% |
| 10 | ㈜아침태양광6호 | 아침태양광6호 태양광발전소 | 1,603.80 | 1.09 | 101 | 95 | 80.85% |
| 11 | 센트럴태양광발전소5호㈜ | 정선하늘6호 태양광발전소 | 918.00 | 1.08 | 58 | 55 | 79.41% |
| 12 | 센트럴태양광발전소6호 주식회사 | 소나무1 태양광발전소 | 947.70 | 1.04 | 60 | 56 | 81.13% |
| 13 | 소나무2 태양광발전소  [센트럴태양광발전소19호㈜로 변경(발전사업양수)예정] | 소나무2 태양광발전소 | 802.12 | 1.06 | 51 | 48 | 82.19% |
| 14 | ㈜다랑쉬태양광 | 다랑쉬 태양광발전소 | 965.79 | 1.06 | 62 | 58 | 83.44% |
| 15 | 센트럴태양광발전소1호㈜ | 황제태양광발전소 | 496.02 | 1.08 | 63 | 60 | 80.49% |
| 황제1태양광발전소 | 496.02 | 1.08 | 80.27% |
| 16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호㈜ | 대길태양광발전소 | 496.02 | 1.08 | 63 | 60 | 80.72% |
| 대길2태양광발전소 | 496.02 | 1.08 | 81.01% |
| 17 | ㈜도화 | 도화 태양광발전소 | 991.62 | 1.08 | 63 | 60 | 81.51% |
| 18 | ㈜지보에너지 | 지보 태양광발전소 | 492.66 | 1.08 | 31 | 30 | 81.57% |
| 19 | ㈜보문에너지 | 주식회사 보문에너지 | 991.62 | 1.08 | 63 | 60 | 82.27% |
| 20 | 솔라다이렉트㈜ | 솔라다이렉트1호 태양광발전소 | 217.56 | 1.10 | 14 | 13 | 82.27% |
| 21 | 채움쏠라㈜ | 채움쏠라1호 태양광발전소 | 990.36 | 1.08 | 64 | 60 | 82.30% |
| 22 | 피씨솔라㈜ | 평창회동1호 태양광발전소 | 999.6 | 1.10 | 65 | 61 | 81.08% |
| 23 | 회동에너지㈜ | 회동에너지1호 태양광발전소 | 653.6 | 1.10 | 42 | 40 | 81.47% |
| 24 | 제이에이치에너지㈜ | 제이에이치에너지2호 태양광발전소 | 309.6 | 1.11 | 72 | 67 | 78.90% |
| 제이에이치에너지1호 태양광발전소 | 756.66 | 1.11 | 79.71% |
| 25 | 대성쏠라㈜ | 대성쏠라 태양광발전소 | 999.60 | 1.11 | 66 | 62 | 80.95% |
| 26 | 더드림에너지㈜ | 더드림에너지 태양광발전소 | 766.08 | 1.11 | 51 | 48 | 80.12% |
| 27 | ㈜제이씨엠에너지 | 제이씨엠에너지 태양광발전소 | 766.08 | 1.11 | 51 | 48 | 79.87% |
| 28 | 비오엠쏠라㈜ | 비오엠쏠라 태양광발전소 | 999.60 | 1.11 | 66 | 62 | 81.08% |
| 29 | 우성에너지㈜ | 우성에너지 태양광발전소 | 656.88 | 1.10 | 43 | 41 | 82.00% |
| 30 | 강원발전㈜ | 강원발전 태양광발전소 | 2,993.76 | 1.08 | 198 | 186 | 77.73% |
| 31 | 에스발전㈜ | 에스발전 태양광발전소 | 2,993.76 | 1.08 | 198 | 186 | 77.56% |
| 32 | 케이발전㈜ | 케이발전 태양광발전소 | 2,993.76 | 1.08 | 198 | 186 | 77.34% |
| 33 | 영동발전㈜ | 영동발전 태양광발전소 | 997.92 | 1.10 | 66 | 62 | 74.33% |
| 34 | 솔라나인㈜ | 길탕1호 태양광발전소 | 2,004.48 | 1.04 | 123 | 116 | 82.67% |
| 35 | 솔라원㈜ | 길탕2호 태양광발전소 | 2,004.48 | 1.04 | 123 | 116 | 82.82% |
|  | 합계 | | | | 2,638 | 2,484 |  |

\* 건설중 발전소의 경우 공사 준공 후 실제 설비용량이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표 기재의 최저시스템효율(PR)은 2021년 8월 31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 바, 해당 기준일 이전에 운영개시일이 도래한 운영중 발전소의 경우 해당 운영개시일 기준 최저시스템효율(운영개시일부터 운영개시일이 속한 분기 다음 연도의 해당 분기 초일까지의 최저시스템효율을 말함)은 상기 표 기재의 최저시스템효율에서 연0.5% 차감을 적용하기 전 효율을 말함.